

[問] 煙氣感知器의 設置對象 및 設置場所에 對하여 알고싶습 니다.

(종로구 종로 2가 최재준)

[答] 問議하여 주셔서 大端히 감사합니다. 煙氣感知器는 正確한 動作特性과 재빠른 警報로서 地下層이나 高層建物 또는 煙氣의 침투가 比較的 용이한 複道·通路·便所·「피트」·「덕트」等에 아주 적합한 Detector인 것입니다.

問議하여 주신 事項에 對하여 간단하게 說明 드리겠습니다.

먼저 煙氣感知器의 設置對象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煙氣感知器는 自動火災探知設備의 一部品이므로 煙氣感知器設置對象은 自動火災探知設備對象에 限한다는 것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自動火災探知設備 設置對象建物의 階段 및 傾斜路, 「엘리베이터」昇降路, 「린넨·슈우트」, 「파이프·덕트」,感知器附着面의 높이가 15m以上에서 20m未滿의 場所에는 全部 煙氣感知器를 設置하여야 합니다.

階段 및 傾斜路에 있어서는 垂直距離 15m마다 煙氣感知器 1個以上을 부착하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複道 및 通路는 消防法施行令 別表 1의 (1)項에서 (6)項까지와 (9)項, (12)項, (15)項의 建物에 設置하여야 하며, 步行距離 30m마다 1個以上 附着하여야 합니다.

地下層, 無窓層, 11層以上 部分의 建築物은 同法施行令 別表 1의 (1)項, (4)項, (5)項(가), (6)項(가), (15)項의 消防對象物에 設置하여야 됩니다.

地層, 無窓層, 11層以上 部分에

는 「스프링클러」 또는 热感知器가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도 煙氣感知器을 設置하여야 하는것입니다. 便所의 경우도 一般热感知器는 例外되었으나 煙氣感知器는 設置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煙氣感知器 設置位置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반자가 낮은 室內 또는 높은 室內에는 出入口部分에 設置하여야 합니다.

2. 반자 附近에 吸氣口가 있는 室內에는 吸氣口 附近에 設置하여야 합니다.

附着面의 높이	感知器의 種類	
	1種 및 2種	3種
4m 未滿	150m ²	50m ²
4m以上, 8m未滿	75m ²	
8m以上, 20m未滿	40m ²	

同位元素인 α 線源을 裝置한 電離極에 電離作用에 依한 空氣를 Ion化하여 微細한 Ion電流가 흐르고 있는 電離極에 煙氣의 微粒子가 들어오면 煙氣의 微粒子에 Ion이 吸着되어 Ion電流가 減少되는 作用을 利用하여 火災感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光電式은 煙氣感知器內部에 들어간 煙氣에 依하여 光源用 發光 「다이오드」의 빛이 亂反射되는 것을 利用한 亂反射光을 捕捉하여 警報를 發합니다. 그構造는 주위의 빛을 遮斷하고 있으므로 光電變換素子에는 「다이오드」의 빛은 받지 않으나 煙氣가 들어가면 빛이 散亂反射되어 그 빛은 光電素子의 抵抗值가 變化하여 電子의 増幅되는 作用을 利用하여 煙氣를 檢出하여 火災警報를 發하게 되는 것입니다.

煙氣感知器는 從來의 热感知器 線路에 同一하게 取付할 수 있는 長點이 있고 또한 取付端子는 無極性임으로 取付로 인한 장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一般热感知器에 比하여 動作時間이 빠르고, 정밀동작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热感知器보다 高價라는 점이 큰 결점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人命과 선생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煙氣感知器의 施設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相談코너

安全點檢

3. 煙氣感知器의 下端이 附着面의 아래쪽 0.6미터 以內에 位置하도록 附着하여야 합니다.

4. 煙氣感知器는 壁 또는 棚로부터 0.6미터 以上 멀어진 位置에 附着하여야 합니다.

5. 煙氣感知器는 複道, 通路, 階段 및 傾斜路를 除外한感知區域마다 다음表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煙氣感知器에는 그 原理上으로 여러 種類가 있으나一般的으로 Ion化式과 光電式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Ion化式感知器는 放射性

[問] : 저는 남의 집을 세(賃借)하여營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賃借하고 있는 동안 火災로 인하여
賃借建物을 損傷시켰을 경우 「失火
責任에 관한 法律」에 따라 저에게
重大한 과실이 없는 한 責任이 有
게 되는지요.

만일 책임이 있다면 어떠한 事前
請求策을 取하여야 하는지요?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박종철)

[答] : 賃貸借契約에 依한 貸借人
은 賃貸人에 대하여 貸借物을 善良
한管理者의 注意로서 이를 保存할
義務가 있으며 또한 契約終了時에
는 貸借物을 계약당시의 상태로 환
원시켜返還할義務가 부여되어 있
음은 民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事實
입니다.

따라서 第一의 境遇 貸借人の 過
失로서 火災事故를 일으켰다면 貸
貸人에 대하여서는 借用物返還債務
가 履行不能狀態가 되기 때문에 損
害賠償責任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
니다.

또한一般的으로 過失로서 他人
의 物件을 損傷시킨 者는 不法行爲
責任을 지는 것입니다.

즉 貸借인인 貴하는 損害賠償責
任과 不法行爲責任의 두 가지 責任
을 負擔하게 되는 結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貴下의 경우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에 따라 重大한 過失이
없는 限은 貴下는 不法行爲責任만
을 免除받는 것이고 債務不履行으

로 인한 損害賠償 責任은 그대로
存在하게 됩니다.

結局 貴下는 貸貸人에 대하여는
債務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責任
은 免치 못하므로, 이의 損害를 擔
保하여 주는 保險契約이 있으니 이
方法을 指하시기 바랍니다.

保險契約 方法으로는 建物인 경
우는 建物主를 被保險者로 한 「他人
을 위한 契約」으로 하여 貴下가 保
險料를 負擔하시면 됩니다.

이와반대로 귀하가 貸借한 建物

나 貴下의 所有物에 대한 附保方法
도 아울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建物의 附屬設備로서 貸借人이
設置한 것은 別途의 特別한 約定이
없는 限 建物主를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契約에 있어서는 保險의 目的
에 包含되지 않으므로 別途의 保險
契約 즉 貸借人 本人을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契約을 締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附合物은 비록 貸借人
이 設置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의
所有權은 貸借人の 것으로 부터 建
物主에게 넘어 갔고, 다만 債權(設
置費用)만 存在하기 때문에 通常
의 契約으로는 안되고 貸貸人을 위
한 契約에 保險金請求權의 單純讓
渡契約을 하는 등 別途의 契約을 하
는 措置를 하여야만 完全한 財產의
保護를 할 수 있겠습니다.

要略하면 建物은 建物主를 被保
險者로 하는 保險契約을 하시고 貴
下가 附着하였거나 設置한 物件中
에서 建物에 吸收되지 않고 獨立된
存在를 維持하고 있는 경우에는 建
物에 대한 保險契約과는 別途로 貴
下를 被保險者로 하는 契約을 하시
고 이미 建物의 一部로 吸收되어
버린 附合物은 貴下의 所有가 아님
을 銘心하시고 處理하시면 萬全을
期하실 수 있겠습니다.

相談코너

保 險

에 대하여 建物主가 保險契約을 한
경우에 貴下의 重過失로 火災損害
를 發生시킨 경우에는 일단 保險會社는
建物主에게는 被害補償을 하
고, 建物主로 부터 代位權을 양도
받아 貴下가 負擔하게 되는 損害賠
償責任에 대하여 求償權을 行使하
여 귀하로부터 保險會社는 被害補
償額을 限度로 建物主(債者)를
代位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取得하
게 됩니다.

결하여 貴下가 設置한 附屬設備

